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민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22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30일

발 의 자: 최민규,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규남,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박상혁, 박석, 박영한, 박춘선, 박칠성, 서상열, 송경택,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이경숙,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숙자, 이원형,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최유희, 최진혁, 최호정, 허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57명)

1. 제안이유

- 2023년 교육부의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건수는 2013년 1만 8천 건에서 2022년에는 6만 건을 상회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경험률이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저연령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어릴 적 학교 폭력 피해를 겪은 대학생 절반 이상(54%)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고, 실제로 시도할 가능성이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보다 2.6배 크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음.
- 이는 학교폭력 조치 결정 이후에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및 소송 제기 등으로 학교폭력 조치의 실효성을 저하시켜 피해학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가중시켰기 때문임.

- 따라서 교육감이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과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의 법률 지원과 학교폭력으로 인한 결석 등에 따른 학습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가정학습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신고함 설치, 설문조사 실시 등의 신고제도 근거를 대폭 강화하고 이를 홍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피해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심리 상담과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 프로그램 지원(안 제8조제3호)
- 나.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 지원(안 제8조제5호 신설)
- 다. 피해학생에 대한 가정학습 지원(안 제8조제6호 신설)
- 라. 피해신고 독려를 위해 교육감의 긴급전화와 신고함 설치, 설문조사, 캠페인 등의 실시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의2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동반”을 “동반 상담 및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의 법률 지원

6. 결석 등에 따른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제8조의2제3항 중 “위한 캠페인 등의”를 “위한 긴급전화와 신고함 설치, 설문조사, 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교육감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학생·학부모 <u>동반</u> 프로그램 운영 지원</p> <p>4.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5. (생략)</p> <p>제8조의2(피해신고 등) ①·② (생략)</p> <p>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독려하기 <u>위한 캠페인</u> 등의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8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동반 상담 및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u> -----</p> <p>-----</p> <p>4. (현행과 같음)</p> <p>5. <u>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의 법률 지원</u></p> <p>6. <u>결석 등에 따른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u></p> <p>7. (현행 제5호와 같음)</p> <p>제8조의2(피해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 <u>위한 긴급전화와 신고함 설치, 설문조사, 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u> ----.</p>